

國政監査및 調査에 관한法律案

議案 番號	
----------	--

提案年月日：1988. 7.

提案者：國會法改正
特別委員長

1. 提案經緯

1988年7月7日 第142回國會(臨時會) 第7次委員會에서 辛基夏議員, 金光一議員, 尹在基議員外 6人이 書面으로 動議한 同法律案을 審査한 결과 贊成9人, 反對6人의 表決로 이를 委員會案으로 採擇하고 法制司法委員會의 體系·字句의 審査를 거쳐 提案하는 것임.

2. 提案理由

憲法 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의 國政監査와 國政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必要한 事項을 규정하는 法律을 制定함으로써 國民代表機關인 國會가 國政監査및 調査의 機能을 效率的으로 遂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3. 主要骨子

가. 國政監査는 國政全般에 대하여 所管 常任委別로 每年 定期國會 集會期日의 다음날로부터 20日間 시행하되, 本會議의 議決에 의해 그 時期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案第2條)

- 나. 國政調査는 國政의 特定事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本會議 議決로 시행하고 그 發動要件으로는 議長, 議員 20 人 이상 또는 常任委가 發議하고, 本會議 議決은 在籍議員 1 / 3 以上の 贊成으로 함(案第 3 條)
- 다. 各常任委는 國政調査와는 別途로 그 所管의 特定事案에 대하여 그 議決로써 本會議의 承認을 얻어 調査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本會議의 承認은 在籍議員 3 分の 1 이상의 贊成으로 함(案第 4 條)
- 라. 監査 또는 調査를 시행하는 委員會는 委員會의 議決로 필요한 경우 2 人 이상의 小委員會나 班을 構成할 수 있되, 同一交涉團體 所屬議員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도록 함(案第 5 條)
- 마. 監査 또는 調査를 시행함에 있어서 國會事務處의 職員과 交涉團體 政策研究委員등을 事務補助者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案第 6 條)
- 바. 監査對象機關은 다음과 같이 함(案第 7 條)
- (1)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國家機關
다만, 行政府의 地方行政機關에 대해서는 委員會가 필요하다고 議決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서울特別市·直轄市·道
다만, 그 고유업무에 관해서는 地方議會가 自治적으로 監査를 시행할 때까지에 한하며, 그밖의 地方自治團體는 委員會가 특히 필요하다고 議決한 경우에

한하여 監査對象으로 함.

(3) 監査院의 監査對象機關

다만, 委員會가 특히 必要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사. 監査 또는 調査는 私生活의 侵害나 현재 繫屬中인 裁判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중인 사건의 訴追에

관여할 目的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함(案第 8 條)

아. 委員會의 調査期間은 本會議議決로 특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委員會의 調査結果報告가 本會議에서 議決될때 까지로 하되, 期間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本會議議決

로 이를 연장할 수 있고, 委員會의 中間報告후 조사계 속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本會議議決로

中止할 수 있도록 함(案第 9 條)

자. 監査 또는 調査의 效率的인 수행을 위해서 委員會(小

委員會, 班)에 關聯書類提出要求, 證人·鑑定人·參考人の 出席要求 및 檢證, 聽聞會의 開催等 權限을 부여하고,

누구든지 이에 協助하도록 義務化함(案第 10 條)

차. 監査 또는 調査의 場所는 國會나 現場 또는 기타의

場所 어느곳이든지 可能하도록 함(案第 11 條)

카. 監査는 非公開를 原則으로, 調査는 公開를 原則으로

하되, 委員會議決로 달리 정할수 있도록 함(案第 12 條)

타. 監査 또는 調査의 公正을 保障하기 위하여 除斥 및

回避制度를 두고(案第 13 條), 對象機關의 活動이 현재

히 저해되거나 機密을 正當한 事由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案第 14 條)

파. 監査 또는 調査가 終了된 때에는 지체없이 報告書를 議長에게 提出케 하고, 本會議의 議決로 監査 또는 調査結果를 處理토록 하되, 政府 또는 해당기관에 대한 是正要求 또는 移送토록 하고, 그 處理結果에 대하여 國회가 적절한 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함 (案第 16 條, 第 17 條)

法律第 號

國政監査및 調査에 관한法律案

第1條(目的) 이 法은 國政監査(이하 “監査”라 한다)와 國政調査(이하 “調査”라 한다)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監査) ①國會는 國政全般에 관하여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매년 定期會 集會期日의 다음날부터 20日間 監査를 行한다. 다만, 本會議의 議決에 의하여 그 時期를 變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監査는 常任委員長이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작성한 監査計劃書에 의하여 行한다.

③第2項의 監査計劃書에는 監査班의 編成, 監査日程, 監査要領등 監査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3條(調査) ①國會는 國政의 特定事案에 관하여 調査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本會議의 議決로 調査를 行한다.

②第1項의 調査는 議長, 議員 20人이상의 贊成 또는 常任委員會의 提案으로 發議하며, 本會議議決은 在籍議員 3分の1 이상의 贊成으로 한다.

③第2項의 發議는 調査할 사항, 目的, 방법 및 期間등을 명시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調査는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行하게 하거나 常任委員會로 하여금 行하게 한다.

⑤第4項의 特別委員會는 같은 交渉團體의 議員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⑥第4項의 委員會는 閉會중에도 活動할 수 있으며, 調査와 關聯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調査를 위하여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議長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4條(常任委員會의 調査) ①常任委員會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외에 그 所管의 特定事案에 關하여 그 議決로 調査를 行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 常任委員會는 調査하고자 하는 사항, 目的, 方法 및 期間등을 기재한 書面을 本會議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本會議의 승인은 在籍 議員 3分の1 이상의 贊成으로 한다.

③常任委員會가 閉會중에도 第1項의 調査를 계속할 需要 가 있을 때에는 書面으로 調査를 계속할 이유를 議長에 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5條(小委員會등) ①監査 또는 調査를 行하는 委員會 (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委員會의 議決로 필요한 경우 2人 이상의 委員으로 小委員會나 班을 구성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小委員會나 班은 같은 交涉團體所屬議員만으로 構成할 수 없다.

③第1項의 小委員會나 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國會法 또는 이 法の 委員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條(事務補助者) ①監査 또는 調査에는 事務補助者の 補助를 받을 수 있다.

②事務補助者は 專門委員 기타 國會事務處의 職員과 交涉團體所屬의 政策研究委員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監査 또는 調査의 對象機關의 소속이 아닌 專門家등을 事務補助者로 위촉할 수 있다.

第7條(監査의 對象) 監査의 對象機關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國家機關. 다만, 行政府의 地方行政機關에 대하여는 委員會가 필요하다고 議決하는 경우에 한한다

2. 地方自治團體중 特別市·直轄市·道. 다만, 그 固有業務에 관하여는 地方議會가 구성되어 自治적으로 監査業務를 施行할 때까지에 한하며 特別市·直轄市·道를 제외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는 委員會가 특히 필요하다고 議決한 경우에 한한다

3. 第1號 및 第2號외에 監査院法에 의하여 監査院의 監査對象이 되는 機關. 다만, 委員會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第8條(監査 또는 調査의 限界) 監査 또는 調査는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하기 위한 目的이나, 현재 繫屬중인 裁判에 영향을 미치거나 搜查중인 事件의 訴追에 관여할 目的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第9條(調査의 期間) ①調査를 위한 委員會의 活動期間은 특히 本會議의 議決로 정하지 아니하면 調査委員會의 結果報告가 本會議에서 議決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調査期間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本會議의 議決로 이를 延長할 수 있다.

②本會議는 委員會의 中間報告를 듣고 調査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調査의 중지를 議決할 수 있다.

第10條(監査 또는 調査의 방법) ①委員會(第5條의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監査 또는 調査를 위하여 그 議決로 監査 또는 調査와 관련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關係人 또는 機關 기타에 요구하고, 證人·鑑定人·參考人の 출석을 요구하고 檢證을 행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증거의 採擇 또는 증거의 調査를 위하여 聽聞會를 開催할 수 있다.

③第1項의 요구를 받은 者 또는 機關은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法律에서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委員會의 檢證 기타의 活動에 協調하여야 한다.

④監査 또는 調査를 위한 證人·鑑定人·參考人の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는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1條(監査 또는 調査의 場所) 監査 또는 調査는 委員會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國會 또는 監査·調査對象現場이나 其他의 場所에서 할 수 있다.

第12條(公開原則) 監査는 非公開로, 調査는 公開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달리 정할 수 있다.

第13條(除斥과 回避) ①議員은 직접 利害關係가 있거나, 公正을 기할 수 없는 顯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事案에 한하여 監査 또는 調査에 참여할 수 없다.

②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第1項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議決로 당해 議員의 監査 또는 調査를 중지시키고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監査 또는 調査하게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措置에 대하여 당해 議員의 異議가 있는 때에는 本會議가 議決한다.

④第1項의 사유가 있는 議員은 그 事案에 한하여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監査 또는 調査를 回避할 수 있다.

第 14 條 (注意 義務) ①監査 또는 調査를 할 때에는 그 對象機關의 機能과 活動이 현저히 阻害되거나 機密이 누설되지 않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②議員 및 事務補助者는 監査 또는 調査를 통하여 알게 된 秘密을 正當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15 條 (監査 또는 調査結果의 보고) ①監査 또는 調査를 마친 때에는 委員會는 지체없이 그 監査 또는 調査報告書를 작성하여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 1 項의 報告書에는 監査 또는 調査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重要根據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 1 項의 報告書를 제출받은 議長은 이를 지체없이 本會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議長은 委員會로 하여금 中間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第 16 條 (監査 또는 調査結果에 대한 처리) ①國會는 本會議의 議決로 監査 또는 調査結果를 처리한다.

②監査 또는 調査結果 政府 또는 該當機關의 是正(關係者의 問責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그 是正을 요구하고, 政府 또는 該當機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政府 또는 該當機關에 移送한다.

③政府 또는 該當機關은 第 2 項의 是正要求를 받거나 移送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國會는 第 3 項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第 17 條 (懲戒) 監査 또는 調査를 하는 議員이 第 13 條의 規定에 의한 除斥事由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回避하지 아니하거나, 第 14 條의 規定에 의한 注意義務에 위반한 때에는 國會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懲戒할 수 있다.

第 18 條 (規則) 이 法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공백